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22-76호

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공고

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하여 **“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가공모”**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3일

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

❑ 공모개요

공 모 명	사업기간	총 사업비	모집방식
’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가공모	’23. 1월 ~ 12월	5,900백만원	일반공모

❑ 공모기간

사업분야		공모기간	접수기간
취약계층 숲체험·교육 지원사업	- 숲치유·헬스케어 - 임업·산촌지역 체험관광	’22. 8. 3.(수) 14:00 ~ 8. 9.(화) 18:00	’22. 8. 3.(수) 14:00 ~ 8. 9.(화) 18:00

※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지된 공모계획의 각 사업별 응모 절차를 준수하여 마감기한 내 신청서 제출

- 마감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, 입력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- (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) gfund.fowi.or.kr (산림복지진흥원) fowi.or.kr

❑ 공모분야 및 지원규모

사업분야	응모자격 및 제안서 제출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별 지원규모
취약계층 숲체험·교육 지원사업	-	5,900	-
○ 숲치유·헬스케어 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한 자에 숲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체험·교육지원	산림복지전문업[1] 산림 또는 임업관련 농업회사[2] 사회적경제기업[3] 산림레포츠, 등산 관련 법인[4]	2,400	사업당 3천만원 이상, 1억원 이내 ※신규는 50백만원, 산림복지전문업 개인사업자 30백만원 고정
○ 임업·산촌지역 체험관광 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및 조건불리지역 거주자 등에 산촌·임업자원 연계형 체험·교육지원	산림복지전문업 산림 또는 임업관련 농업회사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여행업중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[5]	3,500	사업당 3천만원 이상, 1억원 이내 ※신규는 50백만원, 산림복지전문업 개인사업자 30백만원 고정

❑ 응모자격 및 절차

○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(www.fowi.or.kr) 공지사항 및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(gfund.fowi.or.kr) 공지사항에서 「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공고」 붙임 파일 참조

❑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응모방법 :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및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된「2023년도 녹색자금 추가공모 계획」의 사업별 응모방법을 참조하여 '22. 8. 3.(수)부터 응모

※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응모 접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(사업별 응모접수 절차 참고),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불안정 및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접수 요망

○ 제출서류 : 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설명자료 참조

❑ 공모안내

○ 온라인 : 진흥원·유관기관 홈페이지 등

❑ 유의사항

○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

※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후나 사업완료 후라도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연도에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사업비(국비)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고 3년간 녹색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○ 사업비는 「녹색자금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」에 따라 편성·집행함

○ 이외 유의사항은 공모사업 사업분야별 유의사항 참조(공모사업 설명자료)

❑ 선정결과 통보

○ '22. 9월말~10월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

※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❑ 기 타

○ '23년 정부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사결과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선정된 사업의 개소수 및 사업규모(예산액 등)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 연락처 042-719-4072~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

---

1)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 등록한 전문업

2)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

3)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을 말하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함

4)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의 산림레포츠, 등산 관련법인·단체

5) 「관광진흥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,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 기업,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함